

공유재산 사용료 등 체납자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0조(사용허가) 및 제81조(변상금의 징수)에 따라 부과된 공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이 체납되어 체납고지서 및 납부안내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6년 8월 24일

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



1. 공고기간 : 2026. 8. 24. ~ 2026. 9. 7. (14일간)
2. 공고방법 : 市 홈페이지
3. 공고대상

연번	등기번호 (반송사유)	수신인 (발송당시)	수신주소 (발송당시)	부과대상	부과금액(원) (연체료 포함)
1	16093-5201-9495 (폐문부재)	한국○○협회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	기타사용료 등	602,410
2	16093-5201-9497 (폐문부재)	강○재	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237번가길	기타사용료	30,250
3	16093-5201-9498 (폐문부재)	故한○산님의 상속인	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일로20번길	변상금	16,991,760
4	16093-5300-6135 (주소불명)	손○우	부산광역시 동래구 칠산로55번길	사용료 등	16,269,370

4. 공고내용

- 가. 「행정절차법」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 본 공고문은 당사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.
- 나. 위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리팀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체납된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.
- 다. 만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(압류의 요건 등) 및 「지방세징수법」 제33조(압류)에 따라 귀하 소유의 재산(자동차, 부동산)을 압류하고, 압류한 재산에 대한 공매 처분 등을 통해 체납금을 충당할 예정이오니 이로 인해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라.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리팀 담당자 (☎ 051-500-2134)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